

	3		1,393,200,000	1,002,546,720	355,126,680	35,526,6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557,280,000	
	13	1	1,422,000,000	1,023,271,200	362,467,800	36,261,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568,800,000	
		2	1,422,000,000	1,023,271,200	362,467,800	36,261,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568,800,000	
		3	1,364,400,000	981,822,240	347,785,560	34,792,2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545,760,000	
	12	1	1,393,200,000	1,002,546,720	355,126,680	35,526,6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557,280,000	
		2	1,393,200,000	1,002,546,720	355,126,680	35,526,6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557,280,000	
		3	1,335,700,000	961,169,720	340,469,930	34,060,35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534,280,000	
	11	1	1,364,400,000	981,822,240	347,785,560	34,792,2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545,760,000	
		2	1,364,400,000	981,822,240	347,785,560	34,792,2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136,440,000	545,760,000	
		3	1,306,900,000	940,445,240	333,128,810	33,325,95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522,760,000	
	10	1	1,335,700,000	961,169,720	340,469,930	34,060,35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534,280,000	
		2	1,335,700,000	961,169,720	340,469,930	34,060,35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133,570,000	534,280,000	
		3	1,278,100,000	919,720,760	325,787,690	32,591,550	127,810,000	127,810,000	127,810,000	127,810,000	127,810,000	127,810,000	511,240,000	
	9	1	1,306,900,000	940,445,240	333,128,810	33,325,95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522,760,000	
		2	1,306,900,000	940,445,240	333,128,810	33,325,95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130,690,000	522,760,000	
		3	1,249,400,000	899,068,240	318,472,060	31,859,7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499,760,000	
	8	1	1,249,400,000	899,068,240	318,472,060	31,859,7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499,760,000	
		2	1,249,400,000	899,068,240	318,472,060	31,859,7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499,760,000	
		3	1,249,400,000	899,068,240	318,472,060	31,859,7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124,940,000	499,760,000	
	7	1	1,235,000,000	888,706,000	314,801,500	31,492,5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494,000,000	
		2	1,235,000,000	888,706,000	314,801,500	31,492,5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494,000,000	
		3	1,235,000,000	888,706,000	314,801,500	31,492,5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123,500,000	494,000,000	
	6	1	1,220,600,000	878,343,760	311,130,940	31,125,3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488,240,000	
		2	1,220,600,000	878,343,760	311,130,940	31,125,3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488,240,000	
		3	1,220,600,000	878,343,760	311,130,940	31,125,3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122,060,000	488,240,000	
다세대 (12세대)	5	1	1,163,100,000	858,135,180	304,964,82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465,240,000	
		2	1,163,100,000	858,135,180	304,964,82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465,240,000	
		3	1,163,100,000	858,135,180	304,964,82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116,310,000	465,240,000	
	4	1	1,148,700,000	847,510,860	301,189,14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459,480,000	
		2	1,148,700,000	847,510,860	301,189,14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459,480,000	
		3	1,148,700,000	847,510,860	301,189,14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114,870,000	459,480,000	
	3	1	1,134,300,000	836,886,540	297,413,46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453,720,000	
		2	1,134,300,000	836,886,540	297,413,46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453,720,000	
		3	1,134,300,000	836,886,540	297,413,46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113,430,000	453,720,000	
	2	1	1,119,900,000	826,262,220	293,637,78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447,960,000
		2	1,119,900,000	826,262,220	293,637,78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447,960,000
		3	1,119,900,000	826,262,220	293,637,78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111,990,000	447,960,000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공통사항

- ▣ 면적표시방법을 중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당사에서 층,구조 등을 감안 조정하여 책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 상기 오피스텔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당 단지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다세대)의 기타공용면적으로 계약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자가 해당시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추후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중 50%는 사용승인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호별 구분 없이 접수를 받고 호수를 추천하여 각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 주차장은 승강기실(주차타워) 주차형태인 기계식 주차입니다.(기계식 60대, 자주식 2대이며,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다세대)의 주차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신청자격

- 분양공고일(2017.05.02)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일정

청약접수기간	청약접수장소	당첨자발표일 / 장소	계약일자	청약금 환불기간
2017. 05.02 (화) [10:00~12:00]	당사 분양사무실	2017. 05.02 (화) [13:00] / 당사 분양사무실(공개추첨)	2017. 05.02 (화) [13:00~18:00]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7영업일 이후

■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

구분	청약신청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방법
오피스텔	2,000만원	KB국민은행	083701-04-065492	KB부동산신탁(주)	청약자명으로 무통장 입금

- 상기 계좌 입금 외에는 어떠한 형태도 청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인명의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금 납입 금융기관 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된 본인(법인)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확인 은 분양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당사에서 선착순으로 공급합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금 환불

- 환불기간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7영업일 이후(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방법
 - 청약신청금 환불은 금품분실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환불서류 미비 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금은 일괄 환불되고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 바랍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 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방법

- 분양홍보관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본인 신청서 (배우자 포함)	1. 청약신청서(분양홍보관에 비치) 2. 본인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3. 본인 확인증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초본(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등록증 등 4. 청약 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서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법인	1. 청약신청서(분양홍보관에 비치) 2.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3. 사업자등록증 4. 청약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법인명의) 6.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환불시 청약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청약 시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7년 05월 02일(수) 13:00 ~ 18:00

- 계약체결장소 : 당사 분양홍보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0-9번지 현대리버스텔 813호)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오피스텔	KB국민은행	083701-04-065492	KB부동산신탁(주)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요망 (예 : 1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홍길동)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계약서 (배우자 포함)	1.청약신청 접수증 2.계약자 인감도장 3.계약자 인감증명서1통 4.계약자 주민등록등본 1통 5.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신청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6.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건본주택에 양식비치) 2.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3.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4.대리인의 도장
법인	1.청약신청서 접수증 2.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법인등기부등본 1통 5.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6.법인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사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7.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분양대금 납부계획에 계약자 성명 및 층·호수를 기재하여 무통장입금하여야 합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위 청약신청금 환불안내를 숙지하시어 반드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분양광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 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공동주택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등)등은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실입주예정일의 최초일 전일까지 분양사업자가 대납하며, 계약자 본인은 잔금시 분양사업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일괄 정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 대출관련 세부일정 및 내용은 당사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집단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급자가 알선하는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 받거나, 계약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중도금대출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분양가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 중복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청약 및 계약은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오니 계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준공예정일 : 2018년 10월 예정

■ 입주예정일 : 2018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1) 분양광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계약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건물과의 이격거리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3)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공급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4)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정배치도, 시설물, 이미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6) 마감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현장시공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동질, 동등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8)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입주 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정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 등의 규모, 재질, 형태, 색채, 위치,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의 처리에 따른 소유기간으로 인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 세대 내 모든 가구, 전기제품, 전시품목 중 일부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무상제공 품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1) 세대별로 외부창호 형태 및 이에 따른 개구부 크기가 상이하므로 계약 세대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3) 욕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양변기, 수전, 유리파티션 등의 제품은 분양자료에 표현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4) 세대별 경계벽은 벽체의 차음 구조 인정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세대 간 벽체에 소음원을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시행,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5) 세대별 복도에 설치 된 보일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6) 세대 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17) 실외기 1대에 여러대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 실외기가 설치 됩니다.
- (18)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9)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의 실제 시공 시 홍보물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부대복리시설 등)은 건축허가(변경)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1) 본 건축물이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자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2)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 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입주 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3) 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266호, 2015.04.30)에 적합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 구조변경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 공용시설(기계실, 주차장 등)면적은 각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세대면적에 따라 균등부과 될 수 있습니다.
- (25)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를 바로 잡고,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매도인 겸 수탁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을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갑"은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6)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27) 내부 천정고는 각 세대(TYP)별 기계설비 장치(천정형 에어컨, 소화배관, 환기장치 등)의 설치에 따라 천정고의 높이 및 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8) 지상1층 공간에 자전거 거치대와 쓰레기 분리시설이 설치되며, 지상1층 남측 전면 공간에 공개공지 또는 화단 등이 설치(변경) 계획 예정이며, 지상1층 복층, 동측 일부 공간에 DA(Dry Area)가 설치 예정에 따라, 해당 층의 계약자는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9) 환풍기 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스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호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1) 부지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리어(DA), 차량 진출입,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2)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3) 모형 및 카탈로그 이미지(투시도, 조감도 등)상에 표현된 조정시설 및 옥상 등에 기계설비(에어컨 실외기, 급배기팬, 급배기구 등) 표현이 없으나 추후 공사완료시에는 설치됩니다.
- (34) 일부 실의 벽체, 천정, 바닥 등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35)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36) 오피스텔 각 세대 전기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실내 신발장에 설치되고 위치 또한 각 세대별로 다른 곳에 설치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37) 오피스텔 세대내 벽체는 위치별, 타입별로 경량벽체가 혼재되어 설치되고, 경량벽체에 벽걸이형 티비, 선반, 기타 중량물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별도 보강재 설치없이 중량물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38)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9) 본 건물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에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임의로 헬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정 및 조정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41) 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 시 최종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비배관 등의 위치에 따라 가구의 사이즈 및 내부 크기가 설계도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2) 단지 내 부대시설물 및 내부 시설물 등은 최종 건축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 및 설치될 예정임을 확인한다.
- (43) 기계/전기실 및 발전기실, 급배기구(연도포함) 등으로 인해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4) 승강기 운행시 진동 및 소음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5) 전기실 및 발전기실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다세대)이 공용으로 사용하오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6) 각종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다세대)이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47)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은 신발장에 설치되며, 단자함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8) 설치된 조명기구 및 기타 배선기구는 수량 및 설치 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9) 대출신청자의 경우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금융거래 신용불량, 총 부채상환비율(DTI) 등 신청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시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중도금 납부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50)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향별, 층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향별 층별 공급금액의 차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1)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히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2)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53)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허가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권리를 시행사, 시공사에 위탁합니다.
- (54) 본 건축물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법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55)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56)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57) 본 건축물 주변도로 단지 외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8)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이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9) 견제품,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정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0) 단지 주변은 개발 진행 중 및 개발 예정으로 분양시점에 표현되던 조감도, 배치도, 모형 등의 주변사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 (61) 부대 복리시설의 내용 및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건축물 내 주민공동시설 등의 관리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62) 차량 진출입 출입구 및 주차장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서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63) 입주 시 이삿짐용 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며, 엘리베이터만 사용가능 합니다.(단, 엘리베이터로 운반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64) 계약세대가 속한 세대의 입지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주차설비 등의 설비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양홍보관에서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65) 오피스텔의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66) 건물 내 차량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67)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다르므로 분양받은자의 책임하에 사전확인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매도인 겸 수탁자, 위탁자 겸 수익자,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68) 본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69) 각 공급 세대는 관련법 등에 적법하게 인접거리 등을 확보하였으나, 일부세대의 경우 불가피하게 건물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수 있으므로 필히 확인바랍니다.
- (70) 본 건축물 외관에 당사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71) 본 건축물의 명칭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72)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73) 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주민등록등본 포함)을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로 필히 제출하시기 바람,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74)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75) 오피스텔의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매립의 경우 타입별로 높이와 구조에 의해 위치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76) 오피스텔 무상제공 품목 : 불박이장, 빌트인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77)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며, 미명시된 사항 중 시설별로 작성되는 분양계약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

구분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탁업자(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이사 정순일	110111-134823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시행사(위탁자)	(주)청담파크 대표이사 김창석,조수제	110111-455554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9-16, 103호-1
시공사	청담SC건설(주) 대표이사 김창석	110111-5597765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5-6, 6층
공동시공사	우암건설(주) 대표이사 이원복	110111-447221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14층(내수동, 세종로대우빌딩)
분양대행사	(주)히든하우스 대표이사 서상원	110111-525010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36 (역삼동 641-1)사갈빌딩 3층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등록번호- 서울 08129, KB부동산신탁(주)
- 소유권에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확보 - 소유권이전형태 : 잔금납입시 개별등기
- 강남구청 건축과 [강남구청-2015-건축과-신축허가-81, 2016년 12월 26일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청담동 130-9번지) 현대리브스텔 813호

■ 분양문의: 02-540-3888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형태지신탁

- 본 건물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주)청담파크, 수탁자 KB부동산신탁(주)이 2017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관리형태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본 건물은 위탁자 (주)청담파크, 수탁자(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인 청담SC건설(주), 우암건설(주), 대출금융기관 등 사이에 관리형태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주)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라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체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태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KB부동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KB부동산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KB부동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청담SC건설(주), 우암건설(주)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공급계약 해제(해지)시 공급대금 반환 채무 이행 등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주)청담파크의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 본 사업은 관리형태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업자로 신탁계좌로 입금된 공급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 (PF 대출금 상환 포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